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 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96. 7. 1.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 관리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도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2조)

나.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조정한다. (안 제3조)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안전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개의5일전에 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 2.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 3.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4.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 5.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 6.제1호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에서 추천하는 자
- 2.파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자
- 3.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4.관할 군부대에서 추천하는 자
- 5.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6.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추천하는 자
- 7.기타 도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8.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 9.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접환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6 (굴착공사의 시행)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의 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관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시행자에게의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제원등에 관한 설명
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의 이행 및 현지여건에 따른 그 변경등의 필요성 여부의 확인

3. 기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①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외의 전기통신관·송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의(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추 74)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사의 집행간부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군도·구도 :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 74)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96.7.1)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24조의8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96.7.1)

제24조의12 (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6.7.1)

제24조의13 (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6.7.1)

제24조의14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7.1)

제25조 (관허사업의 제한) 관리청이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및 신고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주소와 성명
2. 사업의 종류
3.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이유
4. 기타 증빙서류 및 참고사항

(추 74)

파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1996. 3. 1] 조례 제125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다.

③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임명토록 한다.

④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
2.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3. 국방부 산하기관(군부대)
4.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 통산산업부 및 한국전력 산하기관
6. 당해 파주시 경찰서
7. 기타 도로관련사업 유관기관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⑥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 4 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개의 5일전에 전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간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